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11. 24(금) 10:00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35호
- 나. 제 출 자 : 고성미 의원, 도병두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11. 15.
- 라. 회부일자 : 2023. 11. 15.

2.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대의기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민주적인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의회의 위상 확립과 의원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한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안 제1조~제4조)
- 나. 정례회 등 회기 운영(안 제5조~제12조)
- 다. 의회의 기관 등(안 제13조~제20조)
- 라. 의원(안 제21조~제28조)

- 마. 위원회와 위원(안 제29조~제48조)
- 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안 제49조~제55조)
- 사. 질서와 경호(안 제56조~제60조)
- 아. 의원연구활동 등(안 제61조~제6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등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현재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되어 있는 의회 조직 및 운영 등과 관련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기본 조례에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장 총칙(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기본이념,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장 정례회 등 회기운영(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는 연간 회의일수, 회기, 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안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3장 의회의 기관 등(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는 의장의 직무, 의장 및 부의장 관련 사항과 의회에 사무국을 두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4장 의원(안 제21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는 의원의 청가 및 결석, 의원의 사직, 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5장 위원회와 위원(안 제29조부터 제48조까지)에서는 위원회와 위원, 전문위원과 공무원 및 전문가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답변 등(안 제49조부터 제55조까지)에서는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 및 발언과 구정질문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안 제7장 질서와 경호(안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에서는 의회의 경호 및 회의 질서유지, 방청 및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장 의원연구활동 등(안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서는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조례 등의 폐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본 안건은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규정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과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개별 조례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조항 등을 기본 조례안에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반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간결·명확하게 정비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타당한 안건으로 판단됨.

붙임 : 관련 조례 1부.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3. 15.] [조례 제1316호, 2023. 3.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8., 2015.3.2., 2022.1.12.>

제2조(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3.2., 2021.3.18.>

제3조(회기)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5일 이내로 하며, 임시회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3.2., 2021.3.18., 2022.1.12.>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2.1.12.>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08.04.08, 2012.12.31., 2015.3.2., 2022.1.12.>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5.3.2.>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3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1.3.18., 2023.3.15.>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과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04.08., 2015.3.2., 2021.3.18., 2021.1.12., 2023.3.15.>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08.04.08., 2015.3.2., 2021.3.18., 2022.1.12., 2023.3.15.>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시행 2023. 1. 10.] [조례 제1308호, 2023. 01.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03.06., 2014.12.30., 2022.1.12.>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 정수)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1. 의회운영위원회 : 6명 이내 <개정 2014.12.30.>
2. 행정재경위원회 : 5명 이내 <개정 '08.03.06., 2014.12.30.>
3. 복지건설위원회 : 5명 이내 <개정 '08.03.06, 2012.07.17., 2014.12.30.>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이의신청과 제12조의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2.>

2. 행정재경위원회 <개정 2008.03.06.>

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6.>

나. 소통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삭제 2014.12.30., 개정 2022.8.15.>

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11, 2013.1.18, 2019.12.31., 2022.8.15.>

라. 행정안전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08.03.06, 2010.10.11, 2013.1.18, 2019.1.16., 2022.8.15.>

마.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8>

바.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8>

사. <삭제 2022.10.15.>

아. 구청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

3. 복지건설위원회 <개정 '08.03.06, 2018.1.15>

가. 복지가족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08.03.06, 2010.10.11, 2019.1.16., 2019.12.31.>

나. 푸른미래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11, 2019.12.31., 2022.8.15.>

다. 교통건설국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0.11, 2013.10.31, 2019.12.31.>

라. 삭제 <2019.1.16.>

마. 삭제 <2019.12.31.>

바. 문화환경국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17., 개정 2022.8.15.>

사.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15>

③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개정 2014.12.30.>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 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상임위원의 선임 후 상임위원의 개선 또는 보임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4.12.30.>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14.12.30.>

② 보임되었거나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7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 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4.12.30.>

②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2.3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8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2.>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구성, 활동기간, 소요경비에 한정하여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2.1.12.>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심사결과나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본회의 의결 전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22.1.12., 2022.1.12.>

④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1.12.>

⑤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1.12.>

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12.>

⑦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2.1.12.>[중전 제4항에서 이동]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4.12.3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2.30.>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라 둔다. <개정 2014.12.30.>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 10.] [조례 제1309호, 2023. 1.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7.3, '07.02.28, '08.04.08, '19.05.09 >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10.>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개정 '98.9.26>
3. 구청장의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소속 공무원중 구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07.02.28, '08.04.08, 2022.1.12.>
5. 「지방자치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개정 '07.02.28, '08.04.08, 2022.1.12.>
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법인의 임원
7. 의회 또는 위원회가 출석·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 6급 또는 동일 직급 공무원